

奎章閣의 1781년*

— 『內閣日曆』을 통해 본 抄啓文臣 應製의 실상 —

김 광 년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초계문신 제도의 확립과 제술
규정
- III. 1781년 초계문신 제술의 실상
- IV. 맺음말 : 초계문신 제술 기록
의 가치를 곁하여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NRF-2019S1A5C2A02082732), 2020년 동양고전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논문 요약>

이 논문은 奎章閣의 일지인 『內閣日曆』의 기사 중 1781년(정조 5 신축) 기사를 사례로, 1년 동안 규장각 抄啓文臣의 제술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그 실상을 확인하고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초계문신의 計劃에 대해서도 세밀히 분석함으로써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관련 사실들을 새롭게 밝혀내고자 하였다. 1781년에 특별히 주목한 이유는 이 해가 초계문신 제도가 설치되어 시행된 기념비적인 첫 번째 해이며, 이 해에 지어진 초계문신의 제술 작품들이 13년 후인 1794년(정조 18 갑인)에 『奎華名選』으로 묶여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초계문신 제도 자체는 사가독서 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성립되었지만 제술 규정은 文臣 月課 제도에 토대를 두었다. 초계문신은 매달 2차례 제술을 하고 평가받는 강도 높은 수련을 받아야 했고, 그 결과는 연말에 분야별로 합산하여 論賞하였다. 성적 부여는 『경국대전』의 규정을 준용하되 次上에도 점수를 주는 등 일부 차이를 보였다. 초계문신 과사에서 시행된 계획은 성적 우수자에게 그에 합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초계문신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 및 유지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향후 『내각일력』에 수록된 다양한 초계문신 제술의 내용들을 좀더 체계적, 심층적으로 분석한다면 초계문신 제도 및 조선후기 문신 課試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奎章閣, 正祖, 抄啓文臣, 內閣日曆, 文臣講製節目, 奎華名選, 科試, 課試, 製述, 計劃.

I. 머리말

조선시대의 ‘君師’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正祖이다. 정조는 그 어느 왕보다도 훨씬 적극적으로 신하들의 학문 진작을 앞서서 이끌었다. 그는 즉위 직후부터 문신들의 학문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입안하여 시행하였는데, 奎章閣 抄啓文臣 제도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초계문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쏟아 온 덕분에 다양한 관련 문제들이 해명되어 그 실상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 있다고 판단된다.¹⁾ 그러나 초계문신 제술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단편적으로 혹은 초계문신 개인에 주목해서만 언급되었을 뿐이고,²⁾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는 아직 없었다.

다행히 규장각의 일지인 『內閣日曆』에는 규장각에서 있었던 일들이 날짜별로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초계문신 제술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내각일력』의 기사 중 1781

- 1) 鄭玉子가 초계문신 연구의 선편을 잡은 후로 관련 연구가 잘 나오지 않다가 2010년대 이후로 관련 연구 성과가 비교적 풍성하게 제출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초계문신 관련 연구를 일부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옥자, 「奎章閣 抄啓文臣 研究」, 『규장각』 4집, 서울대 규장각, 1981 ; 「正祖의 抄啓文臣 敎育과 文體政策」, 『규장각』 6집,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82 ; 강혜선, 「초계문신의 응제시문 선집 『奎華名選』」, 『정조의 시문집 편찬』, 태학사, 2000 ; 「초계문신과 성균관 유생의 과문 선집 『정시문정』」, 같은 책 ; 천기철, 「正祖와 抄啓文臣들이 본 毛奇齡의 朱熹 淫詩說 비판」, 『한국실학연구』 9집, 한국실학학회, 2005 ; 최두진, 「정조대 인재선발정책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 대학원, 2015 ; 심경호, 「정조의 문체정책과 제술부과」, 『진단학보』 127호, 진단학회, 2016 ; 박선이, 「『正始文程』을 통해 살펴본 정조 문체정책의 한국면」, 『민족문화연구』 80집,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8 ; 김문식, 「정조대 柳台佐의 抄啓文臣 활동」, 『동양학』 76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9 ; 심경호, 「鶴棲 柳台佐의 廣和와 應製에 관하여」, 『동양학』 76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9 등.

- 2) 이를테면 류이좌에 주목한 김문식(2019), 심경호(2019)를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년(정조 5 신축) 기사를 사례로, 1년 동안 초계문신의 제술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그 실상을 확인하고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초계문신의 1년간 제술 활동을 결산하는 計劃에 대해서도 세밀히 분석함으로써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관련 사실들을 새롭게 밝혀내려 한다.

1781년에 특별히 주목한 이유는 이 해가 초계문신 제도가 설치되어 시행된 기념비적인 첫 번째 해이며, 이 해에 지어진 초계문신의 제술 작품들이 13년 후인 1794년(정조 18 갑인)에 『奎華名選』으로 묶여 출판되기 때문이다. 『내각일력』에는 초계문신 제술 외에도 다양한 應製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초계문신에게 부과된 제술³⁾만을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초계문신 제술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II. 초계문신 제도의 확립과 제술 규정

초계문신 제도는 1780년(정조 4) 11월 4일 정조의 하교에서 비롯되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文風이 진작되지 못하는 것은 배양함에 그 근본을 잃었기 때문이다. 명망이 높은 인제는 논할 것도 없고 편지글이나 짓는 작은 기예도 단계를 뛰어넘어 갑자기 얻을 수는 없으니, 반드시 연마한 뒤에야만 성취하여 쓸모가 있게 된다. 근래에 나이 어린 文官들이 겨우 과거에 합격하게 되면 곧 能事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책 한 권 보지 않고 글 한 줄 짓지 않으며, 또한 서적을 시령에 묶어 놓고 무슨 물건인지도 알지 못한다. 習俗이 癩疾로 바뀌면 교정하기가 쉽지 않아, 비록 專經의 규례⁴⁾가 있더라도 시행하고 그만두는 것이 일정치 않고 名實

3) 제술 중에는 試講의 비교를 위해 치러진 제술도 있으나 이 논문의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순수한 제술만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4) 專經의 規例는 專經 文臣 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37세 미만의 문신 중에서 경학에 뛰어난 자를 선발하여 매년 1, 4, 7, 10월 네 차례 五經으로 시험을 보

이 부합하지 않으니, 조정에서 학문을 권장하는 방법이 이미 어그러져 신진들이 태만하고 소홀한 것을 책망하기만 할 수는 없으리라.

나는 지난번 열 가지 일로 자신을 책망하면서⁵⁾ 인재가 나오지 않는 것을 간절히 말하였다. 대저 인재란 한 가지로 간추려 논할 수는 없지만 文學이 가장 중요하다. 대체로 덕행을 쌓아 사업에 발휘하는 일에서부터 임금의 생각을 나타내고 무너진 풍속을 바로잡는 데 힘쓰며 국가의 성대함을 노래하는 것은 실로 世道와 治敎의 흥망성쇠에 관계되니, 어찌 보탬이 작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옛일을 모방하여 교육 제도를 설치함으로써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으로 삼고자 하는데, 湖堂은 너무 간략하여 분주히 다루는 풍조를 열게 될 것이고, 知製는 조금 미약하여 도리어 외람되고 자질구레한 과정으로 귀결될 것이다. 만약 堂下官인 문신 중에서 나이를 제한해 폭넓게 선발하여 經史를 달마다 講하고 열흘마다 시험보여 글을 바치게 하고서 월말에 考課해 근면함과 태만함을 비교하여 상벌을 시행한다면 문풍을 진작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다. 參上과 參下의 문신 중에 나이가 몇 세 이상인 사람을 뽑아 아뢰도록 하라.⁶⁾

위 하교에서 정조는 젊은 문신들이 과거에 합격하고 나면 학문 연마와 문장 수련을 도외시하는 풍조를 개탄하면서 초계문신 제도를 통해 신진을 직접 교육시켜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인재로 만들겠다는 뜻을 드

였다.

- 5) 정조 1년(1777)에 가뭄이 계속되자 5월 3일에 신하들의 조언을 구하는 綸音을 내린 일을 가리킨다. 『正祖實錄』 참조.
- 6) 정조, 『弘齋全書』 권31, 「講製文臣設置敎」, 한국문집총간 262, 515-6면, “文風不振, 由培養之失其本也. 譽髦之盛, 尙矣不可論, 如詞翰小藝, 亦未能躡等而襲取, 必須磨礱激礪, 然後乃可成就而需用. 近來年少文官, 纔決科第, 便謂能事已畢, 不曾看一書做一文, 又從以束閣書籍, 不識爲何物. 習俗轉癩, 矯草未易, 雖有專經之規, 作輟無常, 名實不符. 朝家勸課, 旣乖其方, 新進怠忽, 不可專責. 予於曩日十事責躬也, 以人才之不興, 惓惓爲說, 大抵人才, 不可以一概論, 而文學爲最重. 蓋其蘊之德行, 發諸事業, 以至篩皇猷勵頽俗鳴國家之盛者, 實有關於世道之汚隆, 治敎之興衰, 豈可曰少補也哉! 今欲做古設敎, 以爲作成之道, 則湖堂太簡, 徒啓奔競之風, 知製稍亂, 反歸濫屑之科. 若就文臣堂下中, 限其年廣其選, 月講經史, 旬試程文, 月終而考之, 較勤慢行賞罰, 未必不爲振文風之一助也, 文臣參上參下, 年幾歲以上人抄啓.” 이 글은 『文臣講製節目』 권두에도 그대로 전재되어 있다.

러냈다. 그래서 기존의 학문 및 문장 장려 제도를 참조하되 단점을 보완하고 실효를 거두게끔 한다는 것이 정조의 계획이었다. 여기에서 그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文風’의 문제인 바, 초계문신 제도를 통해 장차 나라에서 중요하게 쓰일 인재를 기르는 동시에 이들이 純正한 문체를 연마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연미한 문풍을 개혁하고, 정조가 이들의 보필을 받아 장차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전에 대한 이해와 문장 창작 능력 두 가지를 겸비해야 한다 보고, 講經과 製述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였다.⁷⁾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마련하여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 위 인용문의 말미를 보면 정조는 이미 나름의 대안을 마련해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堂下官 중에서 일정 연령 이하의 젊은 문신들을 선발하여 경전을 공부시키고, 강경과 제술을 매달 시험하면서 그 성적에 따라 상벌을 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 큰 틀에 있어서는 정조 자신이 위 인용문에서 언급한 湖堂, 즉 賜暇讀書 제도를 계승한 것이었다. 젊은 문신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경전을 교육시키고 시험함으로써 그들의 역량을 끌어올려 장차 국가를 이끌 인재로 선발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조의 이러한 구상은 초계문신 제도의 확립과 시행에서 큰 수정 없이 시행되었으니, 위의 하교에 따라 몇 개월의 기간 동안 초계문신 제도는 착실히 준비되어 갔다. 이듬해인 1781년 2월에 초계문신 20명이 처음으로 선발⁸⁾되는 한편으로, 講製의 규정을 정리한 『文臣講製節目』이 완

7) 이와 관련해서는 박현순(2019), 118-123면 참조.

8) 『내각일력』 정조 5년(1781) 2월 18일, 규장각 소장본(奎13030), “議政府講製文臣抄啓: 奎章閣直閣徐鼎修, 弘文館校理李時秀, 前正言洪履健, 兵曹正郎李益運, 副司果李宗燮, 副司果李東稷, 司憲府監察李顯默, 及第朴宗正, 藝文館奉教徐龍輔, 檢閱鄭東浚·李集斗·金載瓚, 權知承文院副正字李祖承·吳泰賢·趙興鎮·李錫夏, 翼陵別檢洪仁浩, 權知承文院副正字曹允大·李魯春·金熙采.” 이하에서 『내각일력』을 인용할 때에는 書名은 생략하고 연월일과 인용문만

성되어 반포⁹⁾되었고 課講에 사용할 책자를 활자로 인쇄하여 준비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은 순조롭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중 본 논문에서 관심을 가지는 제술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試製는 論, 策, 表, 排律, 序, 記 중 內閣에서 기일 하루 전에 논, 책 등의 제목을 차례로 적어 落點을 받은 후에, 試官이 들어와 三望을 갖추어 書啓하여 또 낙점을 받고, 유념하여 선발된 인원에게 통보한다. 月課의 예에 따라 집에서 지어 바치되 책은 3일을 기한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試券을 풀칠하여 봉하고 내각에 제출하면 내각에서는 時·原任 중에서 해당 달에 낙점을 받은 시관이 本閣(규장각을 가리킴 - 인용자)에 가 시권을 채점하여 榜을 낸 후에, 시관 중에 지위가 낮은 자가 榜目을 정서하여 司卷에게 청하여 入啓한다.¹⁰⁾

위 예문을 통해 초계문신 제도 자체가 사가독서 제도를 계승하여 마련된 한편으로, 초계문신 제술의 구체적 시행 규정은 주로 月課 文臣 제도¹¹⁾를 참고하여 마련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초의 초계문신 제술 규정에는 논, 책, 표, 배율, 서, 기 등 6개의 문체만을 대상으로 시험을 시행하였고,¹²⁾ 課試와 親試를 매달 각각 한 차례씩 設行하였다. 과시는 月課의 예를 따라 시험장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에서 작성해 시권을

제시한다.

9) 같은 곳, “內閣進抄啓文臣講製節目.”

10) 『文臣講製節目』, “試製以論·策·表·排律·序·記中, 自內閣前期一日, 列書論·策等題名受點後, 試官入來, 具三望書啓, 又受點, 念一知委於被選人員. 依月課例, 在家製進, 而策則三日爲限, 其餘則翌日爲限. 糊封試卷, 呈于內閣, 則自內閣牌招時原任中當月受點之試官, 詣本閣, 考卷出榜後, 試官之下位, 正書榜目, 請司卷入啓爲白齊.”

11) 大提學이 주관하여 通訓 이하의 弘文館 관원 및 文名이 있는 자를 선발한 뒤, 분기마다 대제학이 試題를 출제하고 이를 평가하여 상벌을 가하던 제도. 이에 대한 규정은 『續大典』, 『大典通編』 등의 「禮典·獎勵」 항목에 상세하다.

12) 이후 과목은 점점 늘어나 30개의 문체로 확대된다. 정옥자(1981), 17면.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때 작성에 비교적 시간이 걸리는 策文의 경우에만 기한을 3일로 넉넉하게 주었고 나머지 문체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날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친시의 경우는 당연히 임금 앞에 출석하여 시험을 치러야 했으므로 매달 1일(講의 경우는 20일)에 임금께 시험 시행 날짜를 여쭙어 시행하도록 하였다.¹³⁾

한편 『문신강제절목』의 규정 외에, 『내각일력』에는 초계문신 제술과 관련된 크고 작은 규정들이 실려 있어서 『문신강제절목』의 내용과 상호보충이 된다. 일례로 『내각일력』에 수록된 친림 제술 시험의 儀註를 살펴 보자.

초계문신 친림 제술 儀註

掖庭署에서 誠正閣 북쪽 벽에 남쪽을 향하도록 御座를 설치하고, 시관들은 앞마당에 拜位를 설치하고, 應製人들은 시관의 뒤에 배위를 설치하며, 外位를 설치하는 것은 평상시와 같게 한다. 때가 되면 시관은 時服을 입고 응제인을 거느리고 외위에 나아가고, 殿下께서 어좌에 오르신다. 承旨와 史官은 평소처럼 入侍한다. 引義가 시관 및 응제인을 인도하여 들어와 배위에 나아가면, 贊儀가 ‘鞠躬, 四拜, 興, 平身’이라 외치고 시관 이하가 국궁하고 네 번 절한 뒤 일어나 몸을 편다. 시관은 입시하여 下教를 받들어 제목을 쓴다. 傳敎官이 나아가 어좌 앞에서 俯伏하고서 무릎을 꿇고 傳敎를 아뢰고서 부복하고 일어나 나가면 시관이 시제를 받들고 그를 따른다. 전교관이 섬돌에서 서쪽을 향하여 서서 하교가 있음을 칭한다. 찬의가 ‘跪’라 외치면 응제인이 무릎을 꿇는다. 시관이 시제를 인의에게 주어 試題板에 붙이면 전교관과 시관이 모두 돌아와 侍位한다. 찬의가 ‘부복, 흥, 평신’이라 외치면 응제인이 부복하고 일어나 몸을 펴고서 시제를 베껴 각기 자리에 나아가, 試券을 지어 바치고서 물러간다. 시관이 시권을 받들어 科次를 마치면 전하께서 어좌에서 내려와 안으로 들어가시고, 시관 이하가 물러간다.¹⁴⁾

13) 『문신강제절목』, “親臨講製取稟, 製則每月初一日, 講則每月二十日, 自本閣以何日舉行之意, 稟旨定日.”

14) 정조 5년(1781) 5월 2일, “抄啓文臣親臨製述儀註: 掖庭署設御座於誠正閣北壁, 南向, 設試官拜位於前庭, 設應製人拜位於試官之後, 設外位如常. 時至, 試官以時服率應製人, 就外位, 殿下陞座. 承旨·史官入侍如常. 引儀引試官及應製人入

이 의주에는 초계문신의 친림 제술 진행 절차를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당시 제도의 시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미시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물론 초계문신 제도만의 독창적인 의주라 할 수는 없고, 『國朝五禮儀』 등에 실려 있던 기존의 각종 科試의 의주를 모체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¹⁵⁾ 앞서 언급한 것처럼 초계문신 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제도를 이어받은 토대 위에서 이를 약간 손보아 이루어진 것이지, 기존에 전혀 없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니었다.

초계문신들은 이처럼 매달 치러지는 강도 높은 시험을 통해 經學을 연마하고 문장을 수련하였다.¹⁶⁾ 초계문신 제술이 일반적인 문신 응제 혹은 월과와 다른 점은 임금의 명에 의해 특별히 선발된 소수의 초계문신들만이 응시 대상이 되며, 그들의 성취 여부에 임금이 큰 관심을 가지고 상벌을 내린다는 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벌의 규정 또한 엄격하였던 바, 연달아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나쁜 성적을 거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상과 벌이 가해졌다. 이를테면 3번 수석을 차지한 사람은 參外官일

就拜位, 贊儀唱鞠躬, 四拜, 興, 平身, 試官以下鞠躬, 四拜, 興, 平身. 試官入侍, 承教寫題. 傳教官進當座前, 俯伏, 跪啓傳教, 俯伏, 興, 出, 試官捧試題隨之. 傳教官臨階西向立, 稱有教. 贊儀唱跪, 應製人跪. 試官以試題授引儀, 貼于板, 傳教官及試官俱還侍位. 贊儀唱俯伏, 興, 平身, 應製人俯伏, 興, 平身, 寫試題, 各就坐, 製進試券而退. 試官捧券科次訖, 殿下降座還內, 試官以下退.”

- 15) 이를테면 『국조오례의』에는 「嘉禮」 편에 「文科殿試儀」가 수록되어 있고, 『國朝五禮儀通考』에는 「謁聖後文武科試取儀」가 수록되었다. 한편 1788년 경에 이루어진 『春官通考』에는 「嘉禮·科制」 편에 훨씬 세분화된 과시별 의주가 실려 있는 바, 본고에서 인용하고 있는 초계문신 친림 제술 의주가 그대로 수록되었다.
- 16) 초계문신 강제 제도의 모태가 된 월과문신, 전강문신 등의 제도와 초계문신 강제 제도를 비교해 보면, 전자가 연 4회 시험을 치르는데 반해 후자는 매달 강경 2회, 제술 2회 등 매달 4회, 연간 48회의 시험을 치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게다가 월과문신과 전강문신은 각각 별도로 선발하는 반면, 초계문신은 강경과 제술을 모두 응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초계문신에게 부과되는 학업 부담은 다른 유사 제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경우 6품 이상으로 승진시켰고 參上官의 경우는 陞敍하였으며, 반대로 4번 연달아 꼴찌가 된 사람은 벌을 내리고 3번 꼴찌를 하면 禁推, 2번 꼴찌를 하면 추고당하였다.¹⁷⁾

뿐만 아니라 초계문신의 講製 결과는 해마다 연말에 합산하여〔都計劃〕 시상하였다. 이는 『문신강제절목』이나 여타 법전 등의 규정집에 수록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음과 같이 1781년 10월 10일의 정조의 下敎에 의해 시행된 것이 이후 특별한 明文化 과정 없이 定式으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 같다.¹⁸⁾

초계문신이 그해 12달 동안 試官이 주관한 강과 제술, 친림한 강 및 제술은 매년 연말에 분류하여 計劃해 出榜하되 원 방목 아래에 첨부하여 啓下하고, 그중 만약 동점자가 있다면 비교 후에 출방하라. 居首 및 第二, 第三人은 定式에 의해 論賞하라. 내각은 그리 알라.¹⁹⁾

정조의 하교의 내용을 요약하면 강과 제술을 각각 시관이 주관한 것과 친림하여 시행한 것으로 분류하여 한해 동안의 성적(分數)을 합산하여〔計劃〕 상을 내리라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율과나 과강 등에서는 불

- 17) 『문신강제절목』, “試講・試製連三次居首者, 參下陞六, 參上六品以上陞敍. 已陞敍者準職, 已準職者, 始許加資. 而講之連四次居不, 製之連四次居末以上, 稟旨別樣論罰. 三次居不者, 三次居末者, 禁推. 二次居不者, 二次居末者, 推考.”
- 18) 1781년에 처음 도계획을 통한 시상이 이루어진 이래, 철종 10년(1859)에 이르러까지 초계문신(혹은 講製文臣)에 대한 ‘都計劃’은 단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내각일력』 철종 10년(1859) 12월 21일 기사에는 課講, 課試의 두 부문으로 나누어 도계획 내역 및 이에 대한 시상을 지시하는 철종의 하교가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抄啓文臣題名錄』(규장각 소장 奎9728)에는 마지막 초계문신 선발이 1848년(헌종 14)으로 되어 있으나, 그 이후에도 ‘강제문신’이라는 이름으로 문신을 선발하여 강제를 부과하는 제도는 명맥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19) 『日省錄』 정조 5년(1781) 10월 10일 기사, “傳于政院曰: ‘抄啓文臣, 當年十二朔 試官講與製, 親臨講與製, 每歲歲末, 分類計劃出榜, 原榜目下, 帖尾啓下. 其中如有同畫之人, 比較後出榜, 居首及第二第三名人, 依定式論賞事. 內閣知悉.’” 이 내용은 『승정원일기』, 『내각일력』 등 관련 편년사 자료에 두루 실려 있으나 『문신강제절목』이나 『규화명선』 등에는 실려 있지 않다.

수 없는 것으로, 초계문신들의 학업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조의 특별한 배려였다.²⁰⁾ 이에 의해 1781년 12월에 親試, 課試, 課講의 세 분야로 나누어 한해의 성적이 합산되어 정조에게 보고되었고, 정조는 이들을 성적에 따라 차등 시상하도록 하였다.²¹⁾ 뿐만 아니라 초계문신 강제에서 각자 역할을 맡았던 試官 등 관원들에 대해서도 모두 상을 내리도록 하고, 향후에도 이를 정식으로 삼으라 명하였다.²²⁾

III. 1781년 초계문신 제술의 실상

1. 製述의 시행 현황과 그 특징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초계문신 제도는 1781년 2월에 『문신강제절목』의 간행을 시점으로 정립되었다 할 수 있으나 본격적인 제도의 시행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였다. 2개월 후인 4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초계문신 제술이 처음 치러지게 되었는데, 이 때를 기점으로 하여 1781년 한 해 동안 초계문신 응제는 총 17차례 치러졌다. 시험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親試가 7회, 課製가 10회였다. 당초 목표했던 월 2회의 시험에는 못 미치는 수치지만, 일정이 4월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려해볼 때에는 비교적 목표에 근접한 횟수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 각 시험별 시행 일시와 문제, 개인별 성적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도표로 정리해 보았다.

20) 『문신강제절목』, “賞罰, 乃所以風動激勸也. 文衡月課亦賞罰, 則況於內閣講制乎?”

21) 정조 5년(1781) 12월 8일-12일 기사 참조. 이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다음 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22) 정조 5년(1781) 12월 12일, “以備忘記, 傳于鄭東浚曰: ‘弘文館冊吏, 以經筵勞役, 歲末有論賞之事, 況本閣講製使役乎? 終歲之勞, 宜有酬獎之舉. 試官及差備官·贊儀·引儀·色小史等, 各具別單, 懸錄次數, 每歲都計劃日書啓, 著爲定式.’”

일시	시험명 ²³⁾	문체	제목	결과		비고
				성적	이름	
4월 21일	抄啓文臣 應製(1)	論	審像求 良弼	三中	李魯春	
				三下一	洪履健	
				三下	李時秀	
					徐龍輔	
				草三下	李宗燮	
					鄭東浚	
					金載瓚	
				次上	曹允大	
					徐鼎修	
					朴宗正	
					李錫夏	
				次中	洪仁浩	
					李益運	
					金熙采	
次下	李集斗					
	李顯默					
	李東稷					
	吳泰賢					
5월 3일	抄啓文臣 親臨應製 (1)	表	擬宋蘇 頌請如 慶曆故 事詔講 讀官遇 不講日 各進漢 故寔二 事	三上	徐鼎修	
				三下一	金載瓚	
				三下	李宗燮	
					鄭東浚	
				草三下	徐龍輔	
					洪履健	
					李錫夏	
				次上	李時秀	
					金熙采	
					洪仁浩	
				草次上	李魯春	
					李顯默	
				次中	李益運	
					朴宗正	
次下	吳泰賢					
	曹允大					
	李祖承					

5월 24일	抄啓文臣 試製(2)	表	擬皇明 修撰會 榮等謝 命就文 淵閣進 學時幸 館中程 試課業 或召至 便殿問 以經史 以驗所 學	三中一	李益運		
				三中	洪仁浩		
				三下	朴宗正		
				草三下	洪履健		
					李顯默		
				李錫夏			
				次上一	鄭東浚		
				次上	曹允大		
					李祖承		
				草次上	李時秀		
				次中	李魯春		
				次下	徐鼎修		
金載瓚							
徐龍輔							
吳泰賢							
草下	李宗燮						
閏 5월 27일	抄啓文臣 應製(3)	詩 (七律)	旣雨晴 亦佳	三中一	洪履健		
				三中二	鄭東浚		
				三中三	李錫夏		
				三下一	李顯默		
					李宗燮		
				三下	李時秀		
					洪仁浩		
				次上	金載瓚		
					李益運		
				次中	徐龍輔		
					徐鼎修		
					朴宗正		
李祖承							
次下	李魯春						
草次下	曹允大						
6월 9일	抄啓文臣 應製(4)	詩 (七律)	纔到天 中萬國 明		三上一	鄭東浚	親臨考試
					三上	金載瓚	
						洪履健	
					三中	洪仁浩	
						李錫夏	
					三下	李祖承	
						李益運	
					草三下	李祖承	
李宗燮							
次中	李宗燮						
	李時授						

					李魯春	
				次下	曹允大 徐龍輔	
6월 20일	抄啓文臣 親試(2) ²⁴⁾	詩 (七律)	白鹿潭	三上	洪履健	「女鶴琴」으로 비교하여 三中一
					鄭東浚	「女鶴琴」으로 비교하여 三中
					洪仁浩	「女鶴琴」으로 비교하여 三中
				三中	曹允大	
				次上	李魯春	
					李錫夏	
				次中	徐龍輔	
					李祖承	
				次下	李時秀	
				草次下	李益運	
朴宗正						
					吳泰賢	
7월 5일	抄啓文臣 製述(5)	詩 (七律)	近光體	三中	洪履健	親臨考試
				三下	鄭東浚	
				次上	徐鼎修	
					徐龍輔	
					洪仁浩	
					李時秀	
				次中	李錫夏	
					李益運	
				次下	曹允大	
					朴宗正	
李顯默						
李祖承						
					李魯春	
7월 22일	抄啓文臣 試製(6)	詩 (七律)	旣望遊 赤壁	三上	鄭東浚	
				三中一	洪仁浩	
				三中	李祖承	
				三下一	洪履健	
				三下	徐鼎修	
				次上	李時秀	
					李益運	
					曹允大	

					李顯默		
				次中	李錫夏		
					李宗燮		
				次下	徐龍輔		
				草次上	李魯春		
				一	朴宗正		
8월 8일	抄啓文臣 親臨應製 (3)	銘	黔巖紀 蹟碑	三上	鄭東浚	칠언율시 「秋月揚明輝」 로 두 차례 비교하여 三上, 三上. 3연속 삼 상으로 熟馬 賜給	
					徐鼎修	칠언율시 「秋月揚明輝」 로 두 차례 비교하여 三上, 三中. 2연속 삼 상으로 兒馬 賜給	
					洪仁浩	칠언율시 「秋月揚明輝」 로 두 차례 비교하여 三上, 三下. 2연속 삼상 으로 兒馬 賜給	
					三中	徐龍輔	
					三下	李魯春	
						李時秀	
					次中	李顯默	
						李錫夏	
					次下	金載瓚	
						朴宗正	
						李益運	
					更	李祖承	
						李宗燮	
	違	洪履健					
		曹允大					
9월 9일	抄啓文臣 親臨製述 (4)	詩 (七律)	菊花須 挿滿頭 歸	三上	鄭東浚		
				三中	金載瓚		
				三下	李時秀		
				次上	洪履健		
					徐龍輔		
				次中	洪仁浩		
次下	朴宗正						

				更	李祖承	
				落韻違	李益運	
9월 29일	抄啓文臣 製述(7)	銘	讀書堂	二下	鄭東浚	
				三上	洪仁浩 金載瓚	
				三中	金宇鎮	
				三下	徐鼎修	
				次上	朴宗正 李宗燮	
				草次上	李魯春	
				次中	李時秀	
				草次中	洪履健	
				次下	曹允大 李祖承	
				草次下	李錫夏	
				10월 4일	抄啓文臣 親臨製述 (5)	詩 (五律)
二中	鄭東浚					
三上	金載瓚					
三下	洪履健					
次上	李錫夏 徐龍輔					
次中	李時秀 曹允大					
次下	李宗燮					
草次下	李魯春 金宇鎮					
更	朴宗正 李祖承					
詩 (七律)	投轄	三中一	洪履健			
		三中	鄭東浚			
		三下	李錫夏 李時秀			
		次上	李祖承 金載瓚 徐龍輔			
		次中	李魯春 曹允大			
		草次下	洪仁浩 李宗燮			

					金宇鎮			
				更	朴宗正			
10월 23일	抄啓文臣 試製(8)	策	通錢幣	三下一	金載瓚			
				三下	鄭東浚			
					李魯春			
				草三下	李時秀			
				次上	李錫夏			
					李顯默			
					曹允大			
				次中	洪履健			
				次下	洪仁浩			
					李宗燮			
更	李祖承							
	朴宗正							
限後	徐龍輔							
11월 22일	抄啓文臣 親臨製述 (6)	詩 (五律)	換鵝	三中	徐龍輔			
				三下	洪仁浩			
					李時秀			
				次上	鄭東浚			
					洪履健			
					李魯春			
				次下	朴宗正			
					李錫夏			
		草次下	李顯默					
			李宗燮					
			李益運					
		更	曹允大					
				詩 (七律)	放鶴	三下	金載瓚	
							洪履健	
						次上	洪仁浩	
							李時秀	
徐龍輔								
次中	李宗燮							
	鄭東浚							
	朴宗正							
	金載瓚							
	李益運							
曹允大								

				次下	李魯春				
				草次下	李錫夏				
				更	李顯默				
11월 26일	抄啓文臣 試製(9)	詩 (五言 六韻)	暗香浮 動月黃 昏	三上	洪履健				
					李魯春				
					洪仁浩				
								鄭東浚	
				三中	金載瓚				
				次上	李益運				
					李宗燮				
				草次上	李錫夏				
					李顯默				
		次中	李時秀						
		草次中	曹允大						
		次下	徐龍輔						
		草次下	李祖承						
		更	朴宗正						
		詩 (七言 六韻)	馳賜紫 貂裘	三上	鄭東浚				
				三中	洪履健				
				三下	金載瓚				
					洪仁浩				
					曹允大				
次上	李魯春								
	李錫夏								
	李顯默								
	李宗燮								
					李祖承				
次下	朴宗正								
	徐龍輔								
更	李益運								
	李時秀								
12월 8일	抄啓文臣 親臨製述 (7)	詩 (五律)	拱北樓	二中	洪履健				
				二下	李時秀				
				三上	李魯春				
					鄭東浚				
				三中	李錫夏				
					金載瓚				
				三下一	洪仁浩				
三下	李益運								

			指南車	草三下	徐龍輔	
					李顯默	
					李宗燮	
					朴宗正	
					李祖承	
		曹允大				
		二下一		鄭東浚		
		二下二		金載瓚		
		二下		洪仁浩		
		三上		李時秀		
		三中		洪履健		
				李魯春		
				李顯默		
		三下		李錫夏		
				朴宗正		
曹允大						
草三下	徐龍輔					
	李宗燮					
	李益運					
	李祖承					
12월 9일	抄啓文臣 課試(10)	詩 (七言 六韻)	九成鳳 來儀	二上一	洪履健	
				二上	洪仁浩	
				二中	金載瓚	
					李魯春	
				二下	李時秀	
					李錫夏	
				三上	李顯默	
					鄭東浚	
					徐龍輔	
					李益運	
					朴宗正	
				三中	曹允大	
李宗燮						
李祖承						

위의 도표를 통해 우리는 초계문신 제술과 관련된 몇 가지 제도적 특

23) 괄호 안 숫자는 각각 親臨試와 일반 제술의 시행 횟수를 뜻한다.

24) 답안은 집에서 지어 바치게 하고 정조가 친림하여 考試하였음.

정 내지는 관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문신강제절목』에는 매월 한 차례의 친시와 한 차례의 제술을 시험보이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이 엄격히 준수되지는 못했다. 친시의 경우 첫 시행은 5월이었으나 6, 7월을 건너뛰고 8월이 되어서야 두 번째 친시가 치러졌다. 반면 제술의 경우 달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1회, 많게는 2회까지 치러지고 있다. 이는 초계문신 제술에 있어 정식이 비교적 탄력적으로 적용되었음을 뜻한다.

둘째, 科次에 있어서는 居首, 즉 1위를 반드시 확정해야 하였다. 위 도표를 보면 종종 본 시험 후에 比較 製述을 다시 치르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는 최고득점자가 2명 이상이어서 1위를 가릴 수 없을 경우에 한정된다. 2위 이하로는 복수 인원이 선발되어도 무관하나 1위는 반드시 한 사람을 가려야만 했던 것이다. 예컨대 6월 20일의 첫 번째 비교 제술은 최고점인 三上을 맞은 사람이 홍이건, 정동준, 홍인호 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1위를 가리기 위해 7언을시 「玄鶴琴」으로 비교 제술을 진행하여, 홍이건이 三中一, 정동준과 홍인호가 三中을 맞아 홍이건이 1위로 확정되었다. 1위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위인 정동준과 3위인 홍인호에 대한 재차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²⁵⁾

간혹 10월 4일의 친림 제술과 같이 두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각각의 시험에 대해 비교 제술을 시행하는 대신 성적에 따른 획수를 계산하여 이것으로 순위를 확정하였다. 어차피 응시자들은 두 문제 모두에 대해 답안을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처사로 볼 수 있다. 해당 시험에서는 정동준의 계획수가 7획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에 1위로 확정되었다. 특히 정동준은 3차례 연달아 居首를 하였고 제출한 답안이 매우 우수하였으므로 貂皮筇耳掩 1部를 특별히

25) 그러나 비교 제술을 통해서도 1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차, 삼차 비교 제술을 계속 진행한다. 위 도표에서 8월 8일 친시의 경우, 공동 1위 세 사람이 비교 제술을 진행했으나 다시 한 번 동점을 받아 재차 비교 제술을 거친 끝에 1, 2, 3위가 확정된 사례가 있다.

상으로 받았다.²⁶⁾

셋째, 문체적인 측면에서 시, 표, 책, 논, 명 등 다양한 문체가 출제되었다. 그런데 제도의 시행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문신강제절목』의 규정에는 없는 명이 출제된 것으로 보아²⁷⁾ 역시 『문신강제절목』의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은 하되, 여기에 크게 구애되지 않는 것임으로 보인다. 한편 1781년의 비교 제술에서는 문체가 시로만 출제되었는데²⁸⁾ 이는 빠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의도로 생각된다.

2. 製述 및 성적 부여의 사례

이번에는 첫 번째 제술 시험을 대상으로 제술의 실제 양상을 확인해 본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 초계문신 선발 첫해인 1781년에는 徐鼎修를 비롯한 20명이 선발되었다. 이제 이들은 『문신강제절목』의 규례에 따라 講製에 응해야 하였는데, 제반 여건이 미비하여 강제는 즉시 시행되지 못하였고 4월에 들어서야 비로소 준비 과정을 거쳐 실행되었다.

『내각일력』을 보면, 4월 1일부터 이에 대한 구체적 준비를 시작한 정황이 나온다. 즉 4월 1일 直提學 鄭民始가 친립 제술을 시행할 날짜를 여쭙었는데²⁹⁾ 이때는 특별한 답이 없었다가 4월 16일에 재차 날짜를 여쭙어 4월 19일에 거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³⁰⁾ 시험까지 불과 3일밖에

26) 정조 5년(1781) 10월 4일, “七畫, 鄭東浚, 判付. 連三次居首, 兩作俱極繁麗, 更有滋味津津, 甚可尙也, 特賜貂皮笠耳掩一部.”

27) 위 도표를 보면 8월 8일의 친시에서 「黔巖紀蹟碑銘」이, 9월 29일의 과시에서 「讀書堂銘」이 출제되었다.

28) 한편, 試講의 비교를 箴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다. 정조 5년(1781) 5월 6일에 처음으로 치러진 친립 시강에서 서용보와 김재찬이 純通으로 공동 1위가 되자 이튿날 「三畏箴」을 제목으로 比較 製述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 김재찬이 三上으로 居首, 서용보가 三中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29) 정조 5년(1781) 4월 1일, “鄭民始以司卷口傳啓曰: ‘抄啓文臣親臨製述, 以何日舉行乎? 敢稟.’”

30) 정조 5년(1781) 4월 16일, “鄭民始以領籤啓曰: ‘抄啓文臣親臨製述, 以何日舉行乎? 敢稟.’ 傳曰: ‘以四月十九日定行.’”

남지 않았는데 초계문신의 응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었으므로 여러가지 새로이 준비하고 결정할 사항이 많았다. 이에 따라 여러 준비 사항들이 급박하게 진행되었다. 試官도 정해야 했는데, 原任提學 黃景源·李福源·蔡濟恭, 提學 金鍾秀·兪彥鎬, 直提學 鄭民始, 原任直提學 徐浩修, 直提學 沈念祖, 原任直閣 李秉模·鄭志儉·金憲·金宇鎭·金勉柱 등이 擬望되었고³¹⁾ 시험 하루 전인 4월 18일에 이중 李徽之, 黃景源, 李福源, 鄭民始, 沈念祖, 鄭志儉이 최종 낙점되었다.³²⁾ 시험 장소 역시 같은 날에 誠正閣으로 정해졌다.³³⁾

그러나 시험 당일인 4월 19일, 20명의 초계문신 중 曹允大가 부모의 병환을 이유로 지방에 내려가 시험에 참여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조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閣臣들을 파직시키도록 지시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李魯春 외에 應製한 자는 모두 몇 사람인가? 承旨가 알아 오라.”

하니 蔡弘履가 아뢰기를,

“曹允大가 밖에 있어 올라오지 못하여 아가 승정원에서 禁推 傳旨를 捧納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하교한지 며칠이나 되었는데 本閣에서 잘 검칙하지 않고 밖에 있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처음 시행하는데 거행하는 것이 이처럼 태만하고 소홀하니 이후의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응제를 정지하고 時任 閣臣은 모두 파직하여 즉시 속히 물러가게 하라.”

하였다.³⁴⁾

31) 같은 곳, “鄭民始以領籤口傳啓曰: ‘今四月朔抄啓文臣講製試官望筒入啓之意, 敢啓.’”

32) 정조 5년(1781) 4월 18일, “抄啓文臣製述試官望: 原任提學李徽之·黃景源·李福源·蔡濟恭, 提學金鍾秀·兪彥鎬, 直提學鄭民始, 原任直提學徐浩修, 直提學沈念祖, 原任直閣李秉模·鄭志儉·金憲·金宇鎭·金勉柱, 李徽之·黃景源·李福源·鄭民始·沈念祖·鄭志儉落點.”

33) 같은 곳, “政院啓曰: ‘抄啓文臣親臨製述處所, 以何處爲之乎?’ 傳曰: ‘以誠正閣爲之.’”

정조 자신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이 첫 단추부터 삐걱거리게 되었으니 그 실망감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에 정조는 19일에 시행 예정이었던 응제를 21일로 물려 시행하게 하고, 조윤대의 경우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새로이 지방이나 임소에 있는 초계문신에게 本邑에서 關文을 보내어 올라오도록 재촉하는 것을 定式으로 삼도록 하교하였다.³⁵⁾

21일에는 시험 문제가 결정되었다. 문체는 論이었고 문제는 『孟子』 「萬章下」 편의 “청렴, 자임, 온화함은 세 가지 성스러움이다.[淸任和三聖]”, 『書經』 「說命」 편의 “형상을 살펴 좋은 보필을 구하다.[審像求良弼]”, 『서경』 「洪範」 편의 “箕子が 洪範을 진언하다.[箕子陳洪範]” 세 가지가 擬望되어 이 중에서 “審像求良弼”로 낙점되었다.³⁶⁾ 낙점된 제목인 「審像求良弼」은 『서경』 「열명」 편에 등장하는 殷나라 高宗의 고사이다. 고종이 上帝가 자신에게 좋은 보필을 내려주는 꿈을 꾸고서 꿈 속에 나왔던 신하의 모습을 기억하여 그와 같은 외모를 지닌 사람을 찾도록 하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傳說이었다는 내용이다. 정조가 이 제목을 문제로 결정한 데에는 일정한 의도가 깔려 있는 바, 은나라 고종이 부열을 얻었던 것처럼 정조 자신도 초계문신 제도를 통해 자신을 보필하는 어진 신하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試題를 통해 드러냈던 것이다. 이는 초계문신에 대한 정조의 기대감이 잘 드러나는 제목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34) 정조 5년(1781) 4월 19일, “上曰: ‘李魯春外, 應製者凡幾人乎? 知申知入.’ 都承旨蔡弘履奏曰: ‘曹允大在外, 未及上來, 故俄自政院捧納禁傳旨云矣.’ 上曰: ‘下教幾日, 而本閣不善檢飭, 致有稱在外不入來之人乎? 設施之初, 舉行如是慢忽, 日後之弊, 有不可勝言. 應製停, 時任閣臣竝罷職, 使之即速退去.’”

35) 정조 5년(1781) 4월 20일, “抄啓文臣之在外及在任所人, 皆令直關本邑, 如或遲滯, 又卽行會巡營, 使之催促事, 既有筵教. 而日前曹允大之催促, 果依例爲之乎? 此後無或如前泛忽, 必也直關該邑, 從又促關巡營事, 本閣知悉. 有撥馬處, 撥馬行會, 無撥馬處, 亦皆付撥行會, 而不特親臨製講時爲然, 在外而應製時, 亦用此例事定式.”

36) 정조 5년(1781) 4월 21일, “抄啓文臣製述題, 論受點. 論題三: 淸任和三聖, 審像求良弼, 箕子陳洪範, 審像求良弼受點.”

시험 시행 바로 다음날인 22일에는 科次가 진행되어 20명의 초계문신 중 居首를 차지한 이노춘 등 19명³⁷⁾의 성적과 순위가 가려졌다. 초계문신 응제에서는 매 시험마다 榜目を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방목을 작성하여 임금에게 보고함으로써 시험은 종료되었다.

그런데 앞에서 몇 차례 언급했던 것처럼, 규장각 초계 문신들의 응제 결과는 매년 연말에 그해의 시험 성적을 합산하여 성적별로 시상하였다. 성적 산정은 시험마다 성적에 따라 응시자들에게 부여된 劃數가 기준이 되었던 바, 課製, 親試 및 課講의 세 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성적을 합산하여 임금께 보고하고 임금의 명에 따라 시상하였다. 그렇다면 실제 성적은 어떻게 부여되었을까?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필자는 두 문제가 동시에 출제된 11월 26일의 제술 시험 성적 및 計劃 내역 중 일부 수치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간단한 1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성적별 획수를 계산해 보았다.³⁸⁾

성명	五言四韻	七言四韻	計劃
정동준	三上	三上	6획
홍이건	三上	三中	5획
김재찬	三中	三下	3획

三上= x , 三中= y , 三下= z 라고 하면,

정동준의 성적 : $2x = 6$ 이므로 $x = 3$

홍이건의 성적 : $x + y = 5$ 이므로 $y = 2$

김재찬의 성적 : $y + z = 3$ 이므로 $z = 1$

결국 삼하를 1획으로 하여 성적이 한 등급 올라갈 때마다 1획씩이 더해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二上은 6획, 二中은 5획, 二下는 4획이라고

37) 유일하게 응시하지 않은 조흥진은 당시 假注書 직임을 맡아 보느라 응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38) 각 응시자별 계획수는 『내각일력』의 해당 일자 기사를 참조.

예상되는 바, 12월 8일 홍이건이 두 차례 시험에서 각각 이중, 삼중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계산대로면 이중(5획)+삼중(2획)=7획이 되어야 하고, 이 계산대로 홍이건은 두 편의 답안에 대해 총 7획을 획득하였다.

한편 같은 성적에도 一, 二 등의 숫자를 붙여 차등을 두는 경우도 보이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 본다. 같은 시험에서 정동준은 三上과 二下-을 받아 총 7획을 획득했는데, 이하일을 x라고 하면 삼상(3)+이하일(x)=7이므로 이하일도 이하와 동일하게 4획이 주어짐을 알 수 있다. 즉 실제 과차에서는 이하일은 이하보다 높은 등급으로 취급되지만³⁹⁾ 획수 계산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다.⁴⁰⁾

마지막으로 次上 이하 등급의 경우이다. 과시의 성적 부여는 차상 아래로 次中, 次下 등급이 있고, 등급 외, 다시 말해 낙제에 해당하는 更, 違 등의 등급이 존재한다. ‘갱’은 답안의 수준이 아주 떨어지는 등급 외에 부여되고, ‘위’는 답안의 격식을 어긴 경우에 부여된다. 갱과 위는 아예 답안의 기본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획수가 부여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는데, 차상 등의 등급은 어떻게? 이번에는 11월 26일 시험의 응시자 중 李宗燮의 경우를 본다. 그는 두 문제에서 모두 차상을 받아 계획에서 1획을 얻었으므로 차상은 0.5획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각각 草次中과 삼하를 받은 曹允大는 계획에서 1획을 얻었다. 삼하의 획수가 1획이므로, 차중부터는 아예 획수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는 같은 시험에서 李祖承의 획수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는 草次下와 차상을 받아 0.5획을 획득하였는데, 차상이 0.5획이므로 차하는 0획이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9) 해당 시험의 榜에서 이하일을 받은 정동준의 이름이 二下二를 받은 김재찬, 이하를 받은 홍인호보다 앞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40) 이러한 원칙은 ‘草’가 붙은 등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草三下는 三下와 획수가 같아 1획을 받는다.

성적	上上	上中	上下	二上	二中	二下	三上	三中	三下	次上	次이하
획수	9	8	7	6	5	4	3	2	1	0.5	0

위 도표에서 알 수 있듯, 초계문신 제술은 9획을 최고점으로 하여 삼하까지는 1점씩을 감점해 나아가며, 차상은 0.5획이고 차중 이하는 획수를 부여받지 못한다. 이 기준에 의해 초계문신들은 각자 제술 성적에 해당하는 획수를 받았고, 앞서 서술한 대로 연말에 강경과 친시, 과시 세 분야로 나누어 한해 동안의 획수를 합산, 성적에 따라 상을 받았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결과는 『經國大典』에 보이는 文科 제술의 給分 기준⁴¹⁾과 거의 동일하며, 四六文인 表와 箋에 倍劃, 즉 점수를 두 배로 주는 것 역시 『경국대전』의 조문에 의거하여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⁴²⁾ 다만 초계문신 제술의 성적 부여는 아래 두 가지 측면에서 『경국대전』의 그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차상을 받은 경우 아예 급분을 하지 않도록 한 『경국대전』과는 달리 초계문신 제술에서는 0.5획을 부여하였다.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科試에서 차상 이하를 받으면 入格되지 않는 것이 관례였던 것으로 보이나,⁴³⁾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차상도 入格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숙종 연간만 되어도 차상까지는 入格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로 인식되었을 정도이다.⁴⁴⁾ 초

41) 『경국대전』 「禮典·諸科」, “每場上上九分, 其下以次遞減, 下下一分.”

42) 『일성록』과 『내각일력』 1781년 10월 10일의 정조의 언급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 “抄啓文臣講製計劃及表箋倍劃, 一依大典所載定式, 爲之講規, 係是臨講, 講員中如有背講之人, 則粗以上並倍劃事, 內閣知悉.”

43) 명종 때 문과 별시에서 차상과 차중을 맞은 사람까지 합격시키자 이에 대해 사간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명종실록』 명종 11년(1556) 2월 7일, “今年別試文科, 多至二百人. 此雖因倭寇聲息, 廣取武士, 至於文科則不然, 他日不爲宰相·臺諫, 又必有人民之責焉. 若取之不重, 則一時之望亦輕, 豈可使以次上·次中出身者, 取笑於人乎? 大抵科舉之法苟且, 則一時之人, 必生僥倖之心, 不如勿取之爲愈也. 請於文科殿試·文武科重試, 未入格者, 分數不多者, 並勿取.”

44) 『숙종실록』 숙종 26년(1700) 1월 7일, “有一試文……首席以爲此文雖有疵病,

계문신 제술의 성적 부여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반영되어 0획이 아닌 0.5획을 주는 것으로 관례가 정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표와 전 이외의 사료문에 대해서도 배획을 주었다. 초계문신 제술 초기에는 『경국대전』의 규정을 준용하였으므로 표와 전에 한해서만 배획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조는 1782년(정조 6) 5월에 표와 전 이외에 詔, 制, 誥 역시 사료문으로서 다른 산문 문체에 비해 짓기가 힘들니 이들 문체에 대해서도 배획을 주라고 명하였던 바⁴⁵⁾, 이때 이후로 조, 제, 고에 대해서도 배획이 주어졌다.

초계문신 강제외의 채점을 『경국대전』의 규정에 준해서 한다는 것은 가설로 생각해볼 직하지만 명문화된 규정을 찾을 수 없었고 지금까지 이에 대해 검증이 이루어진 적도 없었다. 본고에서는 그것을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하는 한편으로, 초계문신 제술의 성적 부여 및 계획이 『경국대전』의 규정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초계문신 강제에서 연말의 도계획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만큼, 도계획을 실제로 계산해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초계문신 제술 기록의 가치를 곁하여

이 논문은 『내각일력』의 기사 중 1781년(정조 5 신축) 기사를 사례로, 초계문신의 제술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그 실상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초계문신 제술에 대한 성적 평가 및 計劃의 내용에 대해서도 세밀히 분석함으로써 초계문신 제술의 구체적인 시행 과정과 그 특징, 평가 방법과 기준 등 기준에 알려지지 않았던

不無生新可取之處, 書以次上, 卒爲入格.” 차상으로 입격시켰다는 발언에 대해 문체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통해 이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45) 정조 6년(1782) 5월 9일, “以領籤, 傳于鄭志儉曰: ‘詔·制·誥, 亦是四六文字, 依表·箋例倍劃事, 知委.’”

관련 사실들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각일력』은 규장각의 일지라는 역사적 가치 외에도, 초계문신 응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순위, 성적, 우수 답안 등)가 실려 있어서 초계문신 응제의 실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과시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⁴⁶⁾ 뿐만 아니라 科次 과정에서 정조와 시관들 사이에 오간 논의를 통해 과시 답안에 대해 섬세히 분석함으로써 당대 과시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실제 논문으로 구현함으로써 향후 초계문신 제술, 나아가 科試의 문학사적, 사회사적, 정치사적 가치에 대해 좀더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촉발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후속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 논문투고일: 21.12.09 / 심사완료일: 21.12.22 / 게재확정일: 21.12.22.

46) 이와 관련하여, 초계문신 제술 관련 자료로서 『奎華名選』 또한 『내각일력』과 함께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자료인데, 이 책에만 실려 있는 초계문신 제술 작품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본문에서 다룬 「審像求良彌論」의 경우, 유일하게 『규화명선』에만 답안이 실려 전해지고 있다. (洪履健, 李時秀, 曹允大 세 사람의 작품이 수록됨) 이 책과 관련한 유일한 연구로 강혜선(2000)이 있다.

<참고문헌>

- 『內閣日曆』, 규장각 소장본.
- 『文臣講製節目』, 규장각 소장본.
- 『抄啓文臣題名錄』, 규장각 소장본.
- 『奎華名選』, 규장각 소장본.
- 『日省錄』, 규장각 소장본.
- 『承政院日記』, <http://sjw.history.go.kr/>.
-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 正祖, 『弘齋全書』,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및 국역본, <http://db.itkc.or.kr/>.
- 강혜선, 「抄啓文臣의 應製詩文 선집 『奎華名選』」, 『정조의 시문집 편찬』, 태학사, 2000, 153-162면.
- _____, 「抄啓文臣과 성균관 유생의 科文 선집 『正始文程』」, 같은 책, 163-177면.
- 김문식, 「정조대 柳台佐의 抄啓文臣 활동」, 『동양학』 76집, 단국대 동양학 연구원, 2019, 211-236면.
- 박선이, 「『正始文程』을 통해 살펴본 정조 문체정책의 한 국면」, 『민족문화연구』 80집,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8, 47-73면.
- 심경호, 「정조의 문체정책과 제술부과」, 『진단학보』 127호, 진단학회, 131-157면.
- _____, 「鶴棲 柳台佐의 賡和와 應製에 관하여」, 『동양학』 76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9, 157-209면.
- 정옥자, 「奎章閣 抄啓文臣 研究」, 『규장각』 4집,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81, 1-31면.
- _____, 「正祖의 抄啓文臣教育과 文體政策」, 『규장각』 6집,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82, 115-139면.
- 천기철, 「正祖와 抄啓文臣들이 본 毛奇齡의 朱熹 淫詩說 비판」, 『한국실학연구』 9집, 한국실학학회, 2005, 261-289면.
- 최두진, 「정조대 인재선발정책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 대학원, 2015.

Abstract

The year 1781 of the Kyujanggak : The actuality of Chogyemoonshin Zhishu viewed through *Naegagillyeok* / Kim, Kwangnyeon(Korea University)

In this article, I analyzed the reality and clarified the meaning of the 1781 article in the contents of *Naegagillyeok*(內閣日曆) as an example of what form the Chogyemoonshin(抄啓文臣)'s writing test was conducted over a year. In addition, by closely analyzing the contents of *Kyehoek*(計劃), which settles Chogyemoonshin's one-year writing test, I tried to uncover new facts that were not previously known. The reason for the special attention in 1781 was that this year was the first year the Chogyemoonshin system w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nd Chogyemoonshin's works built in this year were published 13 years later in 1794 in *Kyuhwamyongseon*(奎華名選).

The Chogyemoonshin system itself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Sagadokseo(賜暇讀書) system, but the writing test regulations were based on the Wolgwa(月課) system. The Chogyemoonshin had to undergo intensive training, which was evaluated twice a month after taking a writing test, and the results were summed up by field at the end of the year and awarded. In terms of performance evaluation, the regulations of *Gyeonggukdaejeon*(經國大典) were applied mutatis mutandis, bu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at it gave points to grade Chasang(次上). A performance evaluation and *Kyehoek*, conducted in the Chogyemoonshin composition test, were effective in inspiring and maintaining Chogyemoonshins' motivation to learn by providing appropriate benefits to those with excellent grades.

In the future, a more systematic and in-depth analysis of the contents of various Chogyemoonshin writing tests recorded in *Naegagillyeok* will deepen the understanding of the Chogyemoonshin system and tests for servant in the late Joseon Dynasty.

Key words: Kyujanggak(奎章閣), Chogyemoonshin(抄啓文臣), Zhishu(製述, a literary composition), King Jeongjo(正祖), *Naegagillyeok*(內閣日曆), *Munsingangjejeolmok*(文臣講製節目), *Kyuhwamyongseon*(奎華名選), *Gyehoek*(計劃, Sum of test scores), Gwageo(科擧).